



금산군의회
GEUMSAN COUNTY COUNCIL

2024. 9. 5.(목)
제1차 행정복지위원회

- 제32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-

의안 검토보고서

검토안건

금산군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

행정복지위원회
전문위원 이금성

금산군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

1. 회부경위

- 의안번호 : 제87호
- 제 출 자 : 금산군수
- 제 출 일 : 2024. 8. 22.
- 회 부 일 : 2024. 8. 22.

2. 제안이유

- 금산군 문화의 집(2개소)이 2024. 12. 31.자로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운영자에게 위탁 운영을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위탁사무명 : 금산군 문화의집 운영
- 위탁사무내용 : 금산군 문화의집 시설관리 및 운영
 - 문화예술 관련 주민이용 활동 프로그램 기획
 -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제공
 -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
 - 향토 문화예술 소개 및 보급
 -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 사업
- 위탁기간 : 2025. 1. 1. ~ 2027. 12. 31. / 3년간
- 위탁형태 : 무상위탁(조례에 의한 운영비 지원)
- 수탁기관 :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사 후 선정
- 소요예산 : 비용추계서 참조

○ 위탁시설 현황

시설명	소재지	면적	위탁운영자	최초 계약	위탁 기간	예산액 (군비)	비고
금산 문화의집	금산읍 방아동4길 17	1,148.03㎡ (1층~2층)	금산문화의집 운영위원회 (이사장 조성환)	2012. 1. 1.	2023. 1. 1. ~ 2024. 12. 31. (재계약 1회)	161,428천원	
추부 문화의집	추부면 하마전로 31	2,010.14㎡ (1층~4층)	추부문화 예술진흥회 (회장 한송희)	2003. 5. 1.		198,572천원	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금산군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7조
- 「금산군 사무의 위탁조례」 제18조~제22조

5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금산군 문화의집 2개소의 위탁기간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문화의집 운영을 위해 「금산군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7조 및 「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」 제8조에 의거 민간위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자 제출된 안건으로,
- 금산 문화의집과 추부 문화의집은 문화로부터 소외된 지방의 현실 여건을 극복하고자 수준 높은 문화 예술 행사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문화를 향상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관으로 주민 주도 및 참여형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필요로 하므로 사업 목적과 경제적 효율성, 사무 수행 방식 등을 고려할 때 민간 위탁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